

종 법(宗法)

원로원법

제1조 종헌 제41조에 의하여 원로원법을 제정한다.

제2조 원로원의 원로위원은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종정이 추대한다.

1. 대덕법계를 품수한 자
2. 각원의 원장을 역임한 자 중 덕망이 있는 자
3. 종단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

제3조 원로원은 종정 자문기관으로서 종헌종법을 제정할 수 없다.

제4조 원로원장은 부종정이 겸직할 수도 있으며 선출방법은 중앙종회에서 다수결로 추대하되 종정이 임면하고 원로위원은 원로원장의 제청으로 종정이 임면한다.

제5조 원로원장 및 원로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원로원장이 연로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시나 중앙종회에서 상당한 이유로 추대 해제를 결의하였을시는 종정은 즉시 그 추대를 해제 통고한다.

제6조 회의는 원장이 소집하며 총무원장도 참석 발원할 수 있다.

제7조 이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